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2호로 2023년 5월 26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하여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학교 등”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로 범위를 정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으로 명명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안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함.
- 안 제6조(교육)에서는 구청장이 급식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검토 결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농·수산물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단체급식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학생 등의 단체급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본 제정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관리를 통해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6.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 8. 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